

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의안 번호	183
----------	-----

1995. 11. .
사 천 시 장

○ 제 안 이 유

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을 구체화하여 사용료로 인한
마찰을 예방.

○ 주 요 골 자

-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
하던 것을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
를 면제(안 제6조 제4항 제1호)
- 공익단체가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던것을 공공단체가 공공
의 사무에 사용할 경우에 면제(안 제6조 제4항 제2호)

○ 개정 조례안 : 따로붙임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사천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가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
2.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